

더큰 아산
행복한 시민

2020. 5.

- 민간기업 노인취업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 -

2020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아 산 시
[경로장애인과]

목 차

I. 사업개요	1
II.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지원제외 근로자	2
III. 지원 제외 업종	3
① 소비·향락업	3
②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	3
③ 기타 제외대상	3
IV. 지원 한도 및 요건	3
V. 고용장려금 지급	4
VI. 행정사항	4
VII. 홍보계획	5
참 고 자 료	
① (붙임1)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범위	6
② (붙임2) 지방고용노동관서 총청 관할고용센터 현황	7
③ (붙임3)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	8
④ (붙임4)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관련서류	9
⑤ (붙임5) 최저임금 계산 및 적용범위 등 참고사항	12
⑥ (붙임6) 재정 중복지원 사업 참여자 확인서 발급 방법 ..	13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계획

< 목 적 >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 * 도지사 역점과제

➡ 2019년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 은퇴이후 10명 중 6명은 계속 일하길 희망

I 사업개요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보조사업)
- 총사업비: 15,000천원(도비 7,500천원, 시비 7,500천원)
- 지원대상: 노인 신규고용 및 정년자 계속고용 아산시 내 중소기업
*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포함
- 지원금액: 최저임금의 30% 보조(도 15% / 시비 15%) * 기업부담 70%이상
-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지원
- 지원방식: 민간기업 先 임금지급, 後 보조금 지원
- 사업운용: 2020년도 예산액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참여 희망기업 증가 및 지속 추진 요인 발생 시 추경예산 확보 검토



II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지원제외 근로자

아산시 내 민간 중소기업 중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2020년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중소기업

○ [지원기간] 2020. 1. 1. ~ 12. 31.(12개월)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주소지와 취업노인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아산인 경우
- ▶ 2020.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 2020.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을 경우 지원

단, 예외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노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자를 계속고용(만 60세 이상) 한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시군에서 지정·관리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중소기업 여부 불문 민간 중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관련

지원제외 근로자

1. 최저임금(시급 8,590원) 미만 급여 근로자
2.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월 1,795,310원)의 1.5배(2,692,965원) 초과 근로자
* 급여액: 노동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개념(기본급+초과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인 근로자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
4.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5.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7.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8. 신청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가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소기업 범위 및 중소기업 규모기준] 붙임 참조

[최저임금 적용범위 등 참고사항] 붙임 참조

[중소기업확인서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Ⅲ 지원제외 업종

① 소비·향락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법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②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

-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③ 기타 제외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
 - **확인방법:** 사업장별 관할고용센터(붙임2)를 통한 분기별 부정수급 확인
-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요양병원은 중소기업에 포함될 경우 지급 대상**

Ⅳ 지원 한도 및 요건

-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12개월간 2020년 최저임금의 30% 지원
 - 최저임금(시급 8,590원) 월 1,795,310원 임금 지급 시 월 최대 538,600원 지원
 -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48시간
-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무자 포함 지원
 - 1일 3시간 이상(월 10일 이상) 근무,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
- 지원 우선순위: 접수 우선 순
 - 경합 시 순위 ① 기초연금수급대상자 ② 장기 고용 계약 근로자 ③ 1일 풀타임 근로자 ④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로자

V 고용장려금 지급

- 기업은 노인을 고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개월 단위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붙임4 서식)를 아산시에 제출
 - 2020년 12월까지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 [구비서류]**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붙임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계속고용 시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시장은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 대상일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 결정 통지서” (붙임4 서식)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및 안내
- 2019년도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여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으로 고용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계속지원(원칙)
 - 2019년도 미신청 분 소급지원 불가, 2020년 지원기준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VI 행정사항

- (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시·군 통보
 - 시·군 도 지원계획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자율)
- (시장·군수) 고용장려금 지원 업체에 대한 취업, 채용, 근로확인 시행
 -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 지급상황,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여부 등 점검
 - 사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고, 1년의 범위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 현장점검(6월, 9월)

시·군명	업체명	근로자 성명	채용기간	급여액(원)	급여지급 확인	근로계약서 유무
누 계						
월 계						

-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추진 실적(월별)

시·군명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인원(명)	사업장(개소수)
누 계					
월 계					

VII 홍보계획

○ 홈페이지·소식지, 언론매체, 관련단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희망 중소기업발굴

○ 제출서류

- 노인일자리 홍보 추진실적 현황(분기별)

시·군명	홍보방법	대상	시기	비고
누 계				
월 계				

-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희망기업 현황 제출(분기별)

시·군명	희망 업체명(개소)	채용기간	인원(명)	급여액(원)	비고
누 계					
월 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붙임 3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http://www.law.go.kr>)

붙임 2 지방고용노동관서 총청 관할고용센터 현황

관 서 명	관할고용센터	관할구역	비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042-480-6000)	금산군	
	공주고용센터 (041-851-8501)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논산고용센터 (041-851-8501)	논산시, 계룡시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041-620-7400)	천안시, 당진시, 예산군	
	아산고용센터 (041-570-5500)	아산시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00)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청양군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041-661-5600)	서산시, 태안군	

붙임 3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발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촌 체험휴양마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 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보험연도 연평균 기준 (2020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성립월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차수)				
년 월 (명)		구 분	월	월	장려금 지원요건 최초 충족일 (최초 신청 시에만 기재)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년 월 일
		신청인원 (지원대상 노인수)				
3. 신청 내용: 신청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포함여부 (□ 해당 □ 비해당)						
노인채용 현황() 명						
연 번	해당연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년 월 일)	월 임금총액(원) (세전기준)		
1						
2						
3						
4						
5						
장려금 신청인원 () 명, 신청금액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아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 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5. 사업자등록증 6.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 램	담 당	팀 장	과 장
			결재 연월일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노인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촌체험휴양마을 포함)에 해당됩니다.

2.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3.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일 3시간(월 10일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며 월 50만원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국민)

4. 해당 근로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이 아닙니다.

5.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호라동지원기관 중사가가 아닙니다.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확 인 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부지급 일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노인 채용	명	원
신청기간	개월	회차

3. 지급 결정 내용

<input type="checkbox"/> 노인 채용	명	원
신청기간	개월	회차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을 부 지급 일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인)

붙임 5 최저임금 계산 및 적용범위 등 참고사항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급여명세서상 4대 보험, 주민세, 갑근세 등 세금 포함)
 ➔ 최저임금은 4대 보험료, 갑근세 등의 공제항목 금액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의미함 (산재보험료 100% 사업주가 지불)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0년 4월 월급 1,980,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	50,000원
교통비	50,000원
시간외수당	105,0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계	1,980,0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상여금	0원*
식대·교통비	10,230원**
계	1,660,230원

*상여금 125,000원중 2020년 월환산액 1,795,310원의 20% 초과금액
 **식대·교통비 100,000원중 2020년 월환산액 1,795,310원의 5% 초과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660,230원 ÷ 약209시간
 ≈ 7,943원 (8,590원)
 ∴ 최저임금 위반

- 통화가 아닌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불** 산입(식비 등을 식권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불 산입)
- 1주일에 40시간 근무 월급 근로자의 통상 시간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정 근로 시간 수
- ➔ **48시간: 40시간(1주 근로시간)+8시간(유급 주휴일 시간)/ 월 209시간: 48시간×4,345(한 달 평균 주수)**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 성적이나 계속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장려금, 능률수당 등 • 결혼수당, 활동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 사유로 지급하는 임금과 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외의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일·숙직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풍근수당 등 생활 보조 수당 • 식사, 기숙사, 통근차 운행 등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 또는 편의

-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209시간) = 1,795,310원

- (원칙)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노동자는 재정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배제
 - 인건비 전액 재정지원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참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시,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에 한해 지원

*** 인건비 전액 재정지원 판단 기준**

- (원칙)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은 전액 또는 일부 여부에 관계없이
 -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 지원 시' 인건비 지원으로 간주하여 해당 노동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배제('19.9.1.부터)

<인건비 전액 지원 판단 예시>

- 월급제: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시간을 곱한 금액
 - * 예시①)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19년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이상
 - * 예시②) 1일 4시간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19년 8,350원) × 104시간 = 868,400원 이상
 - ※ 월 210만원(시간당 10,020원) 이상 인건비 재정지원의 경우는 안정자금 지원대상아님
- 시급제: 시급으로 판단
 - *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19년 8,350원) 이상

- 국가 등 재정 중복지원에 따른 배제 대상 사업 및 처리 방안

< 중복 지원에 따른 배제 대상 사업 >

사업명	소관 부처(부서)	확인서 발급기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록물정리사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보존인수과)	추후 협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지방자치단체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장애근로인지원사업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안정부)	지방자치단체

< 처리 방안 >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 위 5개 사업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배제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 ① '19.9.1.부터 해당 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해 지원 중단, ② 사업장별로 재정지원 사업 참여 확인서를 발급(지방자치단체 등)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③ 확인 후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재개할 예정

* 추후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19.9.1.이후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위 5개 사업 외 추가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 협조 요청 사항

○ 소관 부처(부서)

- 해당 사업 관련 규정(지침) 등에 위 5개 사업 참여 시 일자리 안정 자금 중복 지원이 배제된다는 내용 추가
-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정지원 사업 참여 확인서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 지방자치단체 등

- 위 6개 사업 참여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확인요청서를 제출(방문·팩스·우편)할 경우, 담당자는 요청받은 사항을 확인 후 확인서(붙임 양식 참조) 발급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배제 관련 안내 등

확 인 요 청 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번호)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아래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참여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 국가기록물정리사업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 장애근로인지원사업

지원 대상근로자		재정지원 사업 참여 시 √ 표	재정지원 사업명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귀하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가 없는 경우〉

확 인 서

아래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은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아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 업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재정지원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국가기록물정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근로인지원사업

년 월 일

발급기관장

직인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

확 인 서

기 업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 기업 소속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에 대하여 재정지원 사업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국가기록물정리사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장애근로인지원사업
- 참여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합니다.

지원 대상근로자		재정지원 사업 참여 시 √표	재정지원 사업명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발급기관장

직인